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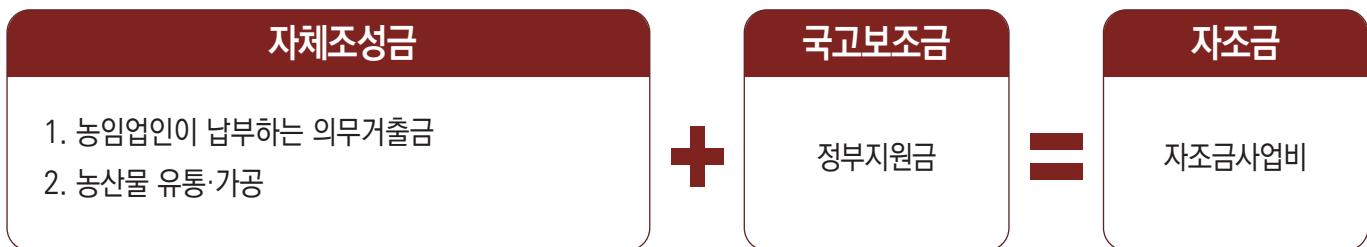
# 밤 자조금 안내문



## 밤 자조금이란?

▶ 밤 자조금단체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3호)가 농산물의 소비 촉진, 품질향상,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·운용하는 자금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 제4호)입니다.

## ▷ 자조금의 재원



## 밤 자조금이 필요한 이유는?

▶ 정부지원금과 농임업인이 납부한 의무거출금으로 밤의 소비확대 및 소비촉진 행사, 수급조절, 교육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.

### 홍보영상제작



### 소비촉진 행사



### 교육 및 정보제공





## 의무거출금 산정 및 납부 방법

- ▶ 밤 의무자조금은 밤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재배면적이 5,000㎡ 이상인 농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제도 기준 차등 적용됩니다.

구 분	기 준	비 고
부과대상자	5,000㎡ 이상 생산자	
산정기준	0.0 ~ 20,000㎡ 5원/㎡ 적용	임업직불금 제도 기준 적용 차등화
	20,000 ~ 60,000㎡ 4원/㎡ 적용	
	60,000㎡ ~ 300,000㎡ 3원/㎡ 적용	
한 도	300,000㎡까지	임업직불금 제도 기준 적용

예) 재배면적 80,000㎡생산자 :  $(20,000\text{m}^2 \times 5\text{원}) + (40,000\text{m}^2 \times 4\text{원}) + (20,000\text{m}^2 \times 3\text{원}) = 320,000\text{원}$



## 의무거출금 부과 및 납부 관련 법적 근거

- ▶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농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 납부. 단,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(「농수산자조금법」제19조제1항)
- ▶ 농식품부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, 유통,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(「농수산자조금법」제19조의2)
- ▶ 산림청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 
(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 지침)



## (사)한국밤재배자협회

전 화 : 1577-0345

팩 스 : 041-837-9847

이메일 : koreanut2020@hanmail.net